

6. 새로운 제13-가장(무역과 양성평등)은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.

“제13-가장
무역과 양성평등

제13가.1조
목적

1. 이 장의 목적은 근로자, 소비자, 사업주 및 기업가를 포함한 여성이 세계, 지역 및 국내 경제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는 것이다. 이에 따라, 양 당사국은 이 협정 전반에 걸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을 증진하고, 양 당사국의 무역 및 투자 관계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한다.

2.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이 장의 규정에 더하여, 이 협정의 혜택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촉진하거나 양성평등을 달리 증진하고자 하는 규정이 이 협정의 다른 장에도 있음을 인정한다.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.

가. 부속서 7가-라(국내 규제)

나. 제7-라장(금융서비스)

다. 제7-바장(디지털 무역)

라. 제8장(중소기업)

마. 제9장(정부조달)

바. 제11-가장(혁신), 그리고

사. 제13장(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)

3.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에서 여성에게 존재하는 구조적 또는 그 밖의 장벽에 대처하기

위하여 증거에 기반한 개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. 따라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혜택과 기회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증진하는 정책,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이니셔티브의 설계, 이행, 점검, 평가 및 강화에서 각 당사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. 이러한 맥락에서 양 당사국은 상호 보완적인 국내 및 국제 무역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
제13가.2조

일반 규정

1. 양 당사국은 포용적인 무역정책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가 무역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함을 인정한다. 각 당사국은 1979년 12월 1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「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」에 따른 자국의 의무 이행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.
2. 양 당사국은 2015년 9월 25일 뉴욕에서 국제연합이 채택한 「우리 세계의 변혁: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」 선언,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5에 따라 포용적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견인하는 데 여성의 중요한 기여를 인정한다.
3.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에서 여성에게 존재하는 구조적 및 그 밖의 장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증거에 기반한 개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. 양 당사국은 2017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「무역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관한 WTO 공동 각료 선언」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,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무역에 대한 증거 기반을 발전시키는 데 OECD와 같은 그 밖의 다자 포럼의 이니셔티브, 노력 및 활동을 인정한다.
4. 각 당사국은 또한 여성의 권리 및 양성평등을 다루는, 자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모든 국제 협정 또는 문서에 따른 자국의 의무 이행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.
5. 각 당사국은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무역 및 투자 기회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개선하는 자국의 법, 규정, 정책 및 관행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각 당사국은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국의 양성평등법을 면제하거나 그로부터 달리 이탈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.

6. 각 당사국은 여성의 무역 참여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자국의 무역 및 양성평등법과 기존의 무역진흥 및 무역원활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7. 각 당사국은 무역과 양성평등에 관련된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요약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,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디지털 매체를 구축하거나 유지한다.

8. 양 당사국은 무급 돌봄 및 가사노동의 불공평한 분배가 여성이 세계, 지역 및 국내 경제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해함을 인정하고, 가정 내 책임의 공유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에서 여성의 다양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 및 사회적 책임의 공유 관점을 가진 돌봄 정책 및 프로그램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.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비공식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의 무역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인정한다.

제13가.3조 협력 활동

1. 이 협정이 창출하는 혜택과 기회에 대한 여성의 완전한 접근을 증대하고 증진하며, 세계, 지역 및 국내 경제에서 여성의 공평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은 정책,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의 설계, 이행, 점검, 평가 또는 강화에서 각 당사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. 이에 따라, 양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관계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고자 하는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.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다음을 목표로 하는 정책,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에 관한 정보, 경험 및 증거의 공유

- 1) 직장, 사업, 고위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와 기술 향상을 통하여 경제 및 무역에서 여성의 공평한 참여와 발전을 촉진하는 여성을 위한 무역 기회 지원

- 2) 여성 소유 또는 여성 주도 기업(중소기업을 포함한다)의 경쟁력과 역량, 그리고 자국 내·지역·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 강화
- 3) 책임 있는 기업 행동 이니셔티브 및 다자 포럼에서의 협력 등을 통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양성불평등 해소
- 4) 디지털 양성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비즈니스 도구 이용 증진
- 5) 여성의 창업 및 사업 확장을 위한 멘토링, 훈련, 재정적 지원과 수출 금융 및 벤처자본을 포함한 금융 제공
- 6) 무역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 근로자를 지원하고 성별 임금 격차 줄이기
- 7) 유연근무제를 포함하여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증진하고, 여성이 경제 및 무역에 참여할 수 있고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 내 차별과 성별 기반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도전 과제 및 필요성 인식
- 8) 정부조달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장려
- 9) 표준 개발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고 성인지적 표준 수립 방법에 관한 우수 관행 공유
- 10) 여성의 리더십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개발 및 증진
- 11) 개발도상국에서 무역에 대한 여성의 공평한 참여 지원, 그리고
- 12) 무역 및 양성평등 그리고 관련 지식 및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능

한 경우 WTO와 같은 국제 및 다자 포럼에서 개발도상국 등과의 협력 지원

나. 예를 들어 다음의 증진 등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여성의 공평한 참여 또는 리더십 및 접근성을 장려하고 개선

- 1) 무역에서 여성을 위한 네트워킹 조직,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
- 2) 금융 문해력, 디지털 문해력 및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여성의 기술 및 훈련에 대한 멘토링 또는 개선
- 3)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 사절단이나 무역 조직, 또는 기업 및 여성 기업가 네트워크, 그리고
- 4) 여러가지 중 특히 무역에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, 과학 · 기술 · 공학 · 수학 에서의 여성 교육 및 경력, 그리고

다.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그 밖의 모든 사안

2.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은 성별을 데이터 수집, 분석,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에 통합하는 접근법에 관한 정보를 개발하고 교환하며,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성별 분리 데이터 수집 방법 및 절차, 지표 이용,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론, 그리고 무역에 관련된 성별에 중점을 둔 통계 분석

나.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모두 통합하여, 무역정책을 성별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그 정책이 여성 근로자, 기업가, 사업주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및 평가

다. 적절한 경우, 새로운 질적 및 양적 방법의 개발과 적용을 포함하여 무역과 양

성평등에 관한 연구 수행, 그리고

라.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전문위원회 또는 부속기구가 자신의 업무에 성별 관련 모니터링, 고려사항 및 활동을 통합하도록 이들과 협력하고 장려

3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수행 시, 이 협정 또는 양 당사국의 무역 및 투자 관계와 관련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성과에서 상호 이익과 측정 가능한 진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양 당사국은 여성의 포용적 참여와 함께 이러한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.

제13가.4조

무역과 양성평등 위원회

1. 제15.2조(전문위원회)에 따라 설치되는 무역과 양성평등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정기적 주기로 회합하고,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회합한다. 위원회는 회의 방식에 대하여 결정한다.

2. 위원회는

가. 이 협정 전반에 걸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달리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안을 고려한다.

나. 협력 활동을 결정하고 촉진한다. 그리고

다. 이 장 그리고 이 협정의 다른 장 내 관련 규정의 이행과 운영을 점검하고 검토한다.

3. 위원회는 수행할 협력 활동을 결정할 때, 각 당사국 각각의 우선순위 및 기존 이니셔티브를 고려한다. 위원회는 이 장 그리고 다른 장 내 관련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달리 지원한다.

4. 위원회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을 할 수 있다.

가.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면서, 이 협정에 의하여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기구 및 부속기구와 협력하여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또는 성별 관련 고려사항, 활동 또는 약속을 그들의 업무에 통합할 수 있다.

나. 이 장과 관련된 사안의 검토 시, 시민사회, 근로자, 소비자 단체, 여성 사업주, 기업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와 소통하고, 전통적인 과소대표집단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. 그리고

다. 무역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, 이 장에 따른 또는 이 협정의 다른 장이나 당사국의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또는 무역과 양성평등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권고를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.

5.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내에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자신의 업무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. 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후, 논의의 요약본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13가.5조

분쟁해결의 비적용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(분쟁해결)을 이용할 수 없다.”